

瑞山市公設市場管理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

# 審 查 報 告 書

## 1.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 1999. 7. 23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다. 回附日字 : 1999. 7. 23

라. 上程日字 : 1999. 7. 29

##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地域經濟課長文哲柱)

가. 提案理由

- 시장 사용자의 신고와 승인사항 그리고 의무기간을 완화해주고 불필요한 현행 행정상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사용자에게 대한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나. 主要骨子

- 사용허가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속사용시 기간만료 1개월전 갱신 허가토록 함.
- 시장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지시, 준수사항, 규약에 대한 사전 승인·회계감시등 규제조항 삭제

- 사용자의 신고의 의무기간을 15일로 연장하고 사용권에 대한 양도대여금지 조항을 삭제 신고 사항으로 완화
- 시장의 승인없이 30일이상 휴업금지 사항을 6월이상 휴업할 때로 개정
- 특수한 목적이나 광범위한 시장을 사용하는 자의 허가와 사용료 선납조항 삭제
- 대산 및 해미시장 신축에 따른 공설시장의 위치 및 시설을 표기함.

###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본 조례안은 서산시가 설치 관리하는 서산시 공설시장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시장사용자의 신고의무기간과 승인사항을 완화해주고
  - 지시 준수사항 규약에 대한 사전 승인등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 사용권에 대한 양도대여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익보호와 상인단체의 구성에 있어 시장의 통제를 받던 일부 조항을 삭제하여 “자치회”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도모 하였으며, 새로 설치한 공설시장을 표기한 사항으로
- 본 조례안과 같이 개정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질의 : 현재 공설시장이 무질서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8조제4항 “시장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지시명령을 지켜야 한다”의 조항과

제10조제1항제3호“시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의 조문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공설시장 운영이 더욱 무질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 답변 : 현재 질서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앞으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보다 강도 높은 지도단속과 질서계도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음.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수정안대로 가결

※ 수정안 「붙임」

#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제3호를(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용자의 권리의무) ④시장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지시명령을 지켜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3. 시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사용자의 권리의무) ①~③ (생략) ④ <u>시장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지시명령을 지켜야 한다.</u>	제8조(사용자의 권리의무)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삭제)	제8조(사용자의 권리의무) ①~③ (개정안과 같음) ④ <u>시장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지시명령을 지켜야 한다.</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폐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1~2 (개정안과 같음)
3. <u>시장</u> 이 정한 사용자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3. (삭제)	3. <u>시장</u> 이 정한 사용자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4~10 (생략)	4~10 (현행과 같음)	4~10 (개정안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의안번호	제 29 호
의결년월일	1999. . . (제 회)

##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7. 23.

#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
----------	----

제출년월일 : 1999. 7. 23.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 □ 개정이유

- 신고·승인 사항의 의무기간을 완화 해주고, 불필요한 현행 행정 규제사항을 폐지하여 시장사용자에 대한 권리보호를 도모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가. 사용허가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계속 사용시 기간종료 1개월전에 3년이내의 갱신허가(안 제6조제4항).
- 나. 시장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지시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항목을 삭제(안 제8조제4항).
- 다. 사용자의 신고 의무기간을 즉시에서 15일 이내로 연장하고 동법 제 12조의 사용권의 양도·양수 사항을 제5호에 삽입(안 제9조).
- 라. 시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라는 사항을 삭제(안 제10조제1항제3호).
- 마. 시장의 승인없이 30일이상 휴업금지사항을 6월이상 휴업할 때 휴업 개시일 10일전 신고(안 제11조).
- 바.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대여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 제5호에 신고사항으로 삽입(제12조).
- 사. 상인단체의 자치회를 구성할 때에는 임원과 규약을 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한 단체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항목을 삭제함(안 제20조제2항 내지 제3항).

아. 이조례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를 자치회의 구성 목적에 위배될 때  
로 완화(안 제20조제4항제1호).

자. 회계업무를 필요시 감시할 수 있다라는 항목을 삭제함(안 제20조제5항).

차. 특수한 목적이나 광범위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고 당해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함(안 제21조).

카. 대산 및 해미시장 신축에 따른 공설시장의 위치 및 시설을 표시함(안 별표1).

## □ 참고관련자료

가. 근거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나. 입법예고결과

- 예고일시 : '99. 3. 25(서산시공보 제79호)
- 예고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

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 : '98. 11. 17
- 심의결과 : 완화 [기감 05090 - 158호('99. 2. 2)]

##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공설시장관리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중 “2년” 을 “3년” 으로, “기간종료와 동시에 허가” 를 “1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본문중 “즉시” 를 “15일 이내에” 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권을 양도·양수 하였을 때

제1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임의 휴업의 금지) 사용자는 6월이상 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개시일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치회 구성목적에 위배될 때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설시장의 명칭과 위치 및 시설

시장명	위치	면적 (㎡)	점포			공중화장실		
			구조	동수	건평(㎡)	구조	동수	건평(㎡)
	합계	33,550		74	14,286		11	393.6
동부시장	소계	22,943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64	6,630	콘크리트	3	65.2
	동문동 885-10	3,051						
	" 886-5	179						
	" 898-10	255						
	" 900	19,458						
해미종합 시장	소계	4,585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2	3,502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4	192.0
㉑동	해미면 읍내리 184-1	2,698						
	" " 184-4	188						
	" " 184-5	188						
	" " 184-8	129						
㉒동	" " 174-1	10						
	" " 174-2	588						
	" " 175-1	569						
	" " 175-2	215						
해미시장	소계	2,968	목조합석브릭 스레트	7	456	벽돌스라브	1	26.5
	해미면 읍내리 202	1,193						
	" " 203	499						
	" " 204	1,276						
대산시장	소계	3,054		1	3,658		3	109.9
	대산읍 대산리 119	3,054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1	3,698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3	109.9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정	개정 사유
<p>제6조(사용허가) ①~③(생략)</p> <p>④제1항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u>기간종료와 동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제6조(사용허가) ①~③(현행과 같음)</p> <p>④-----3년-----</p> <p>-----기간종료 1</p> <p><u>월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u>-----</p>	<p>행정규제 완화</p>
<p>제8조(사용자의 권리의무) ① ~ ③(생략)</p> <p>④<u>시장 운영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지시 명령을 지켜야 한다.</u></p>	<p>제8조(사용자의 권리의무) ① ~ ③(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시장에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p> <p>1. ~ 4.(생략)</p> <p>(신설)</p>	<p>제9조(사용자의 신고의무)</p> <p>-----</p> <p>----- 15일 이내로 -----</p> <p>-----</p> <p>1. ~ 4.(현행과 같음)</p> <p>5. <u>사용권을 양도·양수하였을 때</u></p>	
<p>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폐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p> <p>1. ~ 2.(생략)</p>	<p>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의 제한) ①-----</p> <p>-----</p> <p>-----</p> <p>-----</p> <p>-----</p> <p>1. ~ 2.(현행과 같음)</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황	개 정	개 정 사유
<p>3. <u>시장이 정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u></p> <p>4. ~ 10.(생략) ②(생략)</p> <p>제11조(휴업의 금지) 사용자 <u>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계속하여 30일이상 휴업하지 못한다.</u></p> <p>제12조(사용권의 양도등 금지) 사용자 <u>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수시 및 임시로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u></p> <p>제20조(상인단체의 구성) ①(생략) ②제1항의 자치회를 구성할 때에는 <u>임원과 규약을 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 ③<u>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단체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4. ~ 10.(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p>제11조(임의휴업의 금지) 사용자 <u>는 6월이상 휴업을 하고자할 때에는 휴업개시일 10일전 까지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제20조(상인단체의 구성) ①(현행과 같음) 〈삭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p>행정규제 완화</p>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황	개	정	개 정 사 유
<p>④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자치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자치회의 해체 개편 또는 업무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1.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p> <p>2. ~ 3.(생략)</p> <p>⑤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치회의 회계업무를 감시할 수 있다.</p> <p>제21조(예외규정) 특수한 목적이나 광범위한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p>	<p>④</p> <p>-----</p> <p>-----</p> <p>-----</p> <p>-----</p> <p>-----</p> <p>1. 자치회의 구성 목적에 위배될 때</p> <p>2. ~ 3.(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p>④</p> <p>-----</p> <p>-----</p> <p>-----</p> <p>-----</p> <p>-----</p> <p>1. 자치회의 구성 목적에 위배될 때</p> <p>2. ~ 3.(현행과 같음)</p> <p>&lt;삭제&gt;</p> <p>&lt;삭제&gt;</p>	<p>행정규제 완화</p>	